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홍성룡 의원 외 19명

나. 의안번호 : 제332호

다. 제출일자 : 2019. 1. 23.

라. 회부일자 : 2019. 1. 31.

## 2. 제안사유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“시내버스정류소”, “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”, “정차범위”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시내버스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다. 시민들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을 정함(안 제6조)

라.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첨부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9. 2. 8. ~ 2019. 2. 15.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) : 수정가결<sup>1)</sup>

- 「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」에 대한 관련 법규 저촉 여부 검토(시설물 관리부서 의견조회 등) 결과 관련 법규 저촉사항은 없음
- 단, 조례안 중 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) 1,2호에서 규정한 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규정을 보도구간으로 명확히 하고,
- 제8조(유지관리) 준고영 하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류소 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완화적용
- 기존 정류소시설물에 대한 유예기준을 부칙 경과규정에 추가하여 조례 개정시 문제점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

1) 버스정책과-10706(2019.4.16.)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제정안은 서울시 내에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■ “용어의 정의” 관련(안 제2조)

- 동 제정안은 시내버스 정류소, 편의시설, 노선 및 정차범위 등 동 제정안에서 사용할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
- 다만, 제4호는 버스가 정차하는 차도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하는 보도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도 부분에 대한 정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

또한 정류소 개선범위를 “표지판 및 승차대 후방 10미터”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버스가 정차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

#### ■ “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” 관련(안 제4조)

- 동 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시내버스 정류소 및 편의시설의 이용

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시장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

이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 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### ■ “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” 관련(안 제5조)

- 동 제정안은 시내버스 정류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 환경, 교통 상황 및 다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내버스 승하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
- 다만, “정류소 등이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” 사항은 정류소 등의 시인성 및 이용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현재 정류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준과 동 조례 제정 이후 설치될 정류소 등의 설치 기준 등의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### ■ “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” 관련(안 제6조)

- 동 제정안은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정차범위 내에 시내버스가 접근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가 도착했을 경우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

현재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, 가로수 등이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시야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

점에서 이를 개선할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- 다만,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하는 보도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동 조문의 명칭도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
- 한편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내용 중 “교통관련 시설”과 “필요 시설물”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실제 운영과정상 조문 해석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,

가로수, 가로등, 전주, 한전박스, 소화전,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의 경우 보도 및 정류소 등의 이용환경을 저해할 여지도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시민생활의 필수 요소로 각종 시설물 위치가 제한될 경우 시민 불편을 저해할 우려도 있을 수 있음

#### ■ “현황조사 및 정비” 및 “유지관리” 관련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- 동 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 설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,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- 다만, 안 제8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내버스 정류소 및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서울시와 운송사업자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임

## ■ 부칙 관련(안 부칙)

- 동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·운영 중인 정류소 등 시설의 경우 동 조례안의 내용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

동 조례의 적용 시점 및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시행 및 적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